

부산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3187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조후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19.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1. 접수 제26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 소외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 6. 24. 이자 연 7.6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2020. 6. 20.부터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였고, 2020. 4. 11.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113,680,264원이다.

다. 그런데 C는 2019. 10. 1.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1. 접수 제26561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별지